

2020년도
본청[4차 산림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2020년도 본청[4차 산림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0. 9. 21. ~ 9. 25.(5일간) / 2018. 6월부터

■ 감 사 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6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6건 (주의 5건, 시정 11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8건 / 2,323,9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영동군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반 운영

- 읍·면 생활권 주변 정자, 벤치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 및 보수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제고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6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산림과	총 16건	주의 5 시정 11		회수 8건 2,323,900원
1	복무	◦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48,500원
2	사업	◦ 조림사업 업무 추진 소홀	주의		
3	예산, 회계, 계약	◦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 1,130원
4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소홀	시정		
5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주의		
6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공개 소홀	시정		
7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48,390원
8		◦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416,720원
9		◦ 기간제근로자 교육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80,000원
10		◦ 전기요금 납부 소홀	시정		회수 5,160원
11		◦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12		◦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3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시정		
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191,000원
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33,000원
16		◦ 준공검사 기한 내 미실시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8,5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관리 부적정

【현 황】

○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변경 및 중식비 지급 현황

구분	성명	근무시간			중식비 중복지급		비고
		정상근무	변경근무 (6.15. ~7.14.)	대체휴무 부여	여부	지급액	
합계	2명					48,500원	
상등병	백○○	주간 (09:00~18:00)	기간중 토요일 (09:00~18:00)	다음주 월요일	여	21,500원	4회
병장	한○○	주간 (09:00~18:00)	기간중 일요일 (09:00~18:00)	다음주 금요일	여	27,000원	5회

【위법부당사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간근무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출퇴근 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급량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급량비 설정에 따라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며,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2019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사회

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최소기준)에 따라 1일 중식비를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 지급 시 중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할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상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용두공원 내 각종 시설관리 등에 따른 공휴일 근무를 위하여 부서 내 배정된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주간근무를 공휴일 근무로 변경하면서 부서 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임의로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복무요원 운영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중복지급된 중식비 48,500원을 회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조림사업 업무 추진 소홀

【현 황】

□ 2018 매천지구 지역특화조림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8. 3. ~ 5.
- 사업대상지 :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외 1필지
- 사업량 : 4.0ha
- 사업비 : 59,058천원
- 사업내용 : 이팝나무 960본 식재

【위법부당사항】

〈 조림사업 실시설계 소홀 〉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자는 소반별 시방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작성하면서 설계설명서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용역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도 설계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 발주시 사업담당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용역사가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 2018년 매천지구 지역특화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상 사업대상지가 우리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레인보우힐링타운 사업지구내 위치해 있음에도 토지이용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사에서도 설

계설명서 등 설계도서상 사업대상지의 특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용역결과물이 제출되었음.

- 이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관광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원형보전지 일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조림
사업이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부서 협의절차 미이행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
안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사업대상지인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의 1필지 일대는 2010.
5. 24. ‘늘머니 과일랜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은 지역으로써 위 사업의
전체면적 1,790,835㎡ 중 원형보전지역이 470,396㎡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조림사업 대상지 4ha에는 원형보전지역 24,957㎡ 중
13,762㎡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따라 원형
보전지역의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
강유역환경청과 사전에 변경협의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
여야 함.
- 산림과에서는 2017. 9월 충북도에 ‘웰니스단지 특화림 ‘사업을
건의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8. 1월에 “2018년 조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림 조성, 지역특화조림 등 6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조림사업은 3월 중순경 영동
읍 매천리 산 35-1번지의 1필지에 대한 벌채를 시작으로 5월에
이팝나무 960본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음.
- 산림과에서는 지역특화조림사업 대상지가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
성사업 지구내 위치해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담당부서인

힐링사업소에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업소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3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비고
사무관리비	20.01.16.	사무용품구입	169,000	-	납품서(99,000원 해당) 및 전체 납품확인 누락	
사무관리비	20.01.16.	꽃감 포장용 쇼핑백 구입	120,000	-	납품서 누락	
시책업무 추진비	20.01.16.	산림과 기자간담회에 따른 급식 제공	152,000	-	집행품의 시 간담회 일 시가 20.01.07.이나, 20.01.14.에 결재	
사무관리비	20.02.06.	2019년 하반기 유류구매 수수료	5,480	-	납기일 경과 지출	연체료별도 납부
사무관리비	20.04.07.	영동강클러스터사업 무인 경비시스템 월정료(4월)	110,100	-	세금계산서 착오 첨부 (금액 7,170원)	
사무관리비	20.05.07.	가로수 관리원 작업도구 구입	462,550	-	카드결제 건임에도 약 식계약 체결	
사무관리비	20.05.21.	정수기 임차료(5월)	19,900	-	납기일 경과 지출	
사무관리비	20.05.21.	사무용품 구입	829,500	-	계좌이체건 임에도 약식계약 누락, 대금지급 지연 (청구일 5.6.), 집행품의일(5.13.)	
공공운영비	20.05.29.	산불LTE무전기 통신요금 (4,5월분)	479,910	-	4월요금 연체	연체료별도 납부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0.06.25.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근무복 구입	1,000,000	-	약식계약 승낙 날인누락	
공공운영비	20.07.01.	LTE무전기 통신요금	732,350	-	요금 연체	연체료별도 납부
공공운영비	20.07.24.	LTE무전기 통신요금	115,170	-	요금 연체	연체료별도 납부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비고
사무관리비	20.07.31.	사무용품구입	928,900	-	약식계약 승낙 날인누락	
공공운영비	20.07.31.	상하수도요금	4,047,920	-	독촉고지서(5,150)원 포함	연체료 970원 포함지출
사무관리비	20.08.07.	사무실내 도면출력용 프린터 수리	1,116,000	-	약식계약 승낙 날인누락	
사무관리비	20.08.25.	유선방송 수신요금(7-8월)	17,760	-	7월분 연체료 포함지출	연체료 160원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되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그럼에도, 산림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2020. 1. 16. 사무용품 구입 외 15건에 대해 납품서 및 납품확인 누락, 대금지급 지연, 납기일 경과 지출, 세금계산서 착오 첨부, 약식계약 누락, 카드결제 건에 대해 약식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사용료와 유선방송수신료의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등 지출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예산지출 처리된 연체료 1,13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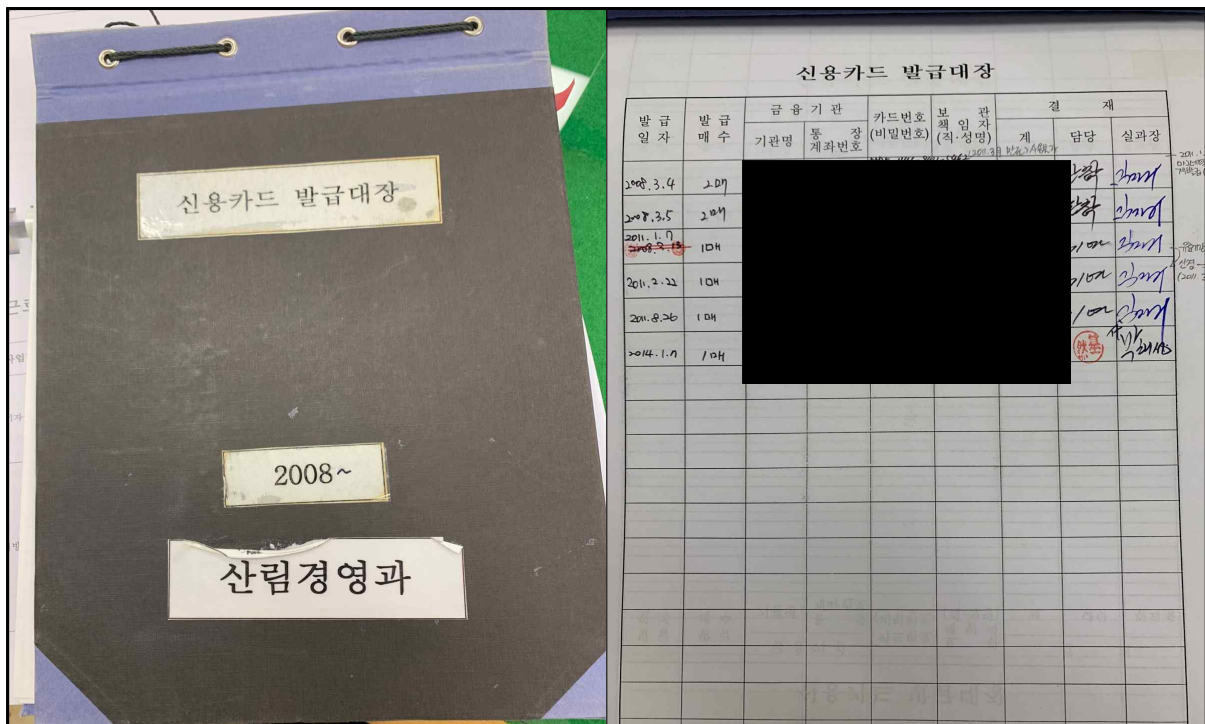
【제 목】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소홀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비고
		직	성명		
16.12.07.	5585-****-****-****	**6급	***	업무용	
18.10.15.	9430-****-****-****	**6급	***	유류구매	

2. 법인카드 발급대장 정리 현황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현황

대 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비고
년	월			
2018	6	미보고	미보고	
	7	미보고	미보고	
	8	미보고	미보고	
	9	미보고	미보고	
	10	미보고	보 고	현금영수증 내역 보고 지연 (19.2.12.)
	11	보 고	보 고	현금영수증 내역 보고 지연 (19.2.12.)
	12	보 고	보 고	현금영수증 내역 보고 지연 (19.2.12.)
2019	1	보 고	보 고	
	2	보 고	보 고	
	3	보 고	보 고	
	4	보 고	미보고	
	5	보 고	미보고	
	6	보 고	미보고	
	7	보 고	미보고	
	8	보 고	미보고	
	9	미보고	미보고	
	10	미보고	미보고	
	11	미보고	미보고	
	12	미보고	미보고	
2020	1	보 고	미보고	
	2	보 고	미보고	신용카드 2,3월분 일괄 보고(3.31.)
	3	보 고	미보고	신용카드 2,3월분 일괄 보고(3.31.)
	4	보 고	미보고	신용카드 4.5.6월분 일괄 보고(6.22.)
	5	보 고	미보고	신용카드 4.5.6월분 일괄 보고(6.22.)
	6	보 고	미보고	신용카드 4.5.6월분 일괄 보고(6.22.)
	7	미보고	미보고	
	8	미보고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6]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부서별로 발급
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
(별표 제1호 서식)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함.
- 그럼에도, 산림과에서는 위 [현황 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현황 2]와 같이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현황 3]과 같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보고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카드발급대장에 대한 현행화 및 매월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유실수단지 시비용 복합비료 구입	19.01.31.	2,580	40	30	10	과다매입
개인진화장비 구입	19.08.28.	4,464	70	60	10	과다매입
주민참여 감나무단지 보식용 묘목 구입	19.11.19.	2,800	50	30	20	과다매입
감나무 가로수 및 유실수단지 토양 개량제 구입	19.12.10.	4,318	70	60	10	과다매입
산불예방진화대 진화복 구입	19.12.10.	3,418	70	50	20	과다매입
대도시 판매행사 홍보보시식용 꽃감 구입(80박스)	19.12.30.	3,500	60	50	10	과다매입
대도시 판매행사 홍보보시식용 꽃감 구입(75박스)	19.12.30.	3,000	70	40	3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산림과에서는 2019.01.31. 지급한 유실수단지 시비용
복합비료 구입 외 6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한 필증
을 접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공개 소홀

【현 황】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지급일자	적요	집행액	지급과목	해소과목
합 계	14건	554,920		
2018.06.29.	TV수신료	17,76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8.10.05.	TV수신료	52,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8.10.05.	파쇄기 비닐 구입	45,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8.10.19.	산림문화행사 부식비	169,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2018.10.19.	산림문화행사 부식비	60,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2018.11.26.	정수기 렌탈료	99,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1.16.	정수기 렌탈료	39,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2.25.	TV수신료	17,76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3.20.	TV수신료	8,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4.24.	TV수신료	8,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5.30.	TV수신료	8,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7.01.	TV수신료	8,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7.31.	TV수신료	8,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2019.08.19.	TV수신료	8,8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¹⁾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하여야 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개인적인 용도 또는 월정액으로 집행을 금지하고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한 바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 양양과 실·과·소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하는 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TV수신료”, “파쇄기 비닐 구입”, “정수기 렌탈료” 등 12건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산림문화행사 부식비” 등 2건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세출예산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였으며,

1)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2019년 6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누락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48,39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비상근무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 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 시간	적정 시간	비고
			구분		(분)	(분)	(분)	(분)	
2018-11-18	**6급	A	휴일	현업	10:02	18:00	238	240	산불비상근무
2019-04-14	**6급	B	휴일	현업	10:00	14:56	56	240	산불비상근무
2019-04-06	**8급	C	토요일	현업	10:00	18:00	240	240	-
2019-12-01	**7급	D	휴일	현업	10:00	14:10	10	240	산불비상근무
2020-02-29	**8급	E	토요일	현업	13:00	21:00	240	240	산불비상근무
2020-02-29	**	F	토요일	현업	13:00	21:00	240	240	산불비상근무
2020-02-15	**6급	A	토요일	현업	10:02	18:00	238	240	산불비상근무
2020-02-23	**6급	G	휴일	현업	10:44	17:56	192	240	산불비상근무
2020-03-01	**9급	H	휴일	현업	14:00	21:15	135	300	코로나19비상근무
2020-03-01	**6급	A	휴일	현업	14:00	21:09	129	300	코로나19비상근무
2020-03-21	**6급	I	토요일	현업	12:00	18:00	120	240	산불비상근무
2020-06-21	**7급	C	휴일	현업	18:00	23:58	0	240	코로나19비상근무 (일부미지급)
2020-08-27	**6급	G	목요일	현업	00:04	08:00	240	0	태풍비상근무 (대체휴무)
2020-08-09	**7급	J	휴일	현업	00:01	06:30	0	389	집중호우비상근무 (일부미지급)
2020-08-30	**7급	D	휴일	현업	00:01	09:00	59	480	코로나19비상근무 (일부미지급)
2020-08-09	**8급	K	휴일	현업	12:13	18:33	0	380	집중호우비상근무 (일부미지급)
2020-08-08	**9급	L	토요일	현업	15:33	23:29	0	476	집중호우비상근무 (일부미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170	424	594	6,334,850	170	402	572	6,086,460	248,390	
**6급	A	11,401	10	14	24	273,620	10	10	20	228,020	45,600	2018. 11월분
**6급	B	11,634	10	38	48	558,430	10	37	47	546,790	11,640	2019. 4월분
**8급	C	9,434	10	27	37	349,050	10	23	33	311,320	37,730	2019. 4월분
**7급	D	10,509	10	16	26	273,230	10	15	25	262,720	10,510	2019. 12월분
**8급	E	9,733	10	43	53	515,840	10	39	49	476,910	38,930	2020. 2월분
**	F	9,733	10	22	32	311,450	10	18	28	272,520	38,930	2020. 2월분
**6급	A	12,002	10	18	28	336,050	10	14	24	288,040	48,010	2020. 2월분
**6급	G	12,002	10	15	25	300,050	10	12	22	264,040	36,010	2020. 2월분
**9급	H	8,798	10	30	40	351,920	10	27	37	325,520	26,400	2020. 3월분
**6급	A	12,002	10	28	38	456,070	10	26	36	432,070	24,000	2020. 3월분
**6급	I	12,002	10	14	24	288,040	10	12	22	264,040	24,000	2020. 3월분
**7급	C	10,841	10	25	35	379,430	10	28	38	411,950	-32,520	2020. 6월분
**6급	G	12,002	10	31	41	492,080	10	27	37	444,070	48,010	2020. 8월분
**7급	J	10,841	10	32	42	455,320	10	33	43	466,160	-10,840	2020. 8월분
**7급	D	10,841	10	28	38	411,950	10	32	42	455,320	-43,370	2020. 8월분
**8급	K	9,733	10	20	30	291,990	10	22	32	311,450	-19,460	2020. 8월분
**9급	L	8,798	10	23	33	290,330	10	27	37	325,520	-35,190	2020. 8월분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부서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과의 영동역 체온측정소 근무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편성한 근무자 명단 등에 대하여 평일근무 시 대체휴무 및 공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일일 상한시간 8시간으로 월 70시간 범위 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현황 1]에서와 같이 **6급 A 외 10인의 경우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거나 비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6급 G의 경우 태풍비상근무 이후 대체휴무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7급 C 외 4인의 경우 집중호우 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현황 2]에서와 같이 과다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389,770원, 과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141,380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토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과오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248,39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16,72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370,000	140,000	230,000	
2019.04.15.	**6급 M	2019.03.06.	산불예방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04.15.	**6급 M	2019.03.01.	삼일절 제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20,000	0	20,000	초과근무수당 지급
2019.04.15.	**8급 정진웅	2019.0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사무 종사	20,000	0	20,000	개표사무원 수당 기지급
2019.07.15.	**6급 N	2019.06.17.	산지전용 및 태양광시설 현장 점검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9.07.15.	**6급 N	2019.06.27.	토석채취허가 대상지 점검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9.08.02.	**6급 M	2019.07.30.	노조 찬반투표 관련 방문	20,000	0	20,000	출장처리 부적정
2019.08.05.	**8급 C	2019.07.25.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지 점검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9.08.05.	**8급 C	2019.07.30.	등산로 정비사업지 및 산지전용지 점검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9.09.26.	**8급 O	2019.08.29.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체력 검정 및 면접 시행 평가 참석	20,000	0	2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10.25.	** P	2019.09.24.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대상지 및 체력단련시설 사업지 점검	30,000	20,000	1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10.25.	** P	2019.09.04.	군유림유실수단지 호두 생산량 및 견적 조사	30,000	20,000	1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10.25.	** P	2019.09.11.	군유림 유실수단지 관리 및 산림사법 현장확인	30,000	20,000	1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10.25.	** P	2019.09.16.	군유림 및 유실수단지 관리	30,000	20,000	1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10.25.	** P	2019.09.18.	군유림유실수단지 호두 수확 및 산지전용지 점검	30,000	20,000	10,000	여비한도 초과지급
2019.11.11.	**7급 D	2019.10.07.	고당리 버섯재배시설 공사 현장 경계측량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2020.05.26.	** Q	2020.03.10.	코로나19 관련 현장근무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20.06.30.	** F	2020.06.11.	산지전용지점검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20.06.30.	** F	2020.06.15.	산지전용지점검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20.06.30.	** F	2020.06.17.	산지전용지점검	10,000	0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692,900	505,980	186,720	
2019.04.15.	**8급 K	2019.03.04.	남부권 산림사업 법인 간담회 참석 (13:00~18:00)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6,600	6,600	
				교통비	5,200	5,200	0	
2019.10.31.	**6급 R	2019.10.24.	산림치유 위탁사업 간담회 참석 ※ 교육시간 13:00~16:00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6,000	6,660	9,340	
				교통비	5,800	5,800	0	
2019.11.19.	**6급 R	2019.11.14.	2019년 산림치유 위탁사업 간담회 참석 ※ 교육시간 13:00~16:00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6,000	6,660	9,340	
				교통비	5,800	5,800	0	
2019.11.19.	**6급 G	2019.11.21. ~ 2019.11.22.	2019년 산림복지 분야 합동 워크숍 참석	일비	40,000	40,000	0	식비 및 숙박비 중복지급 (참가비 기재)
				식비	40,000	27,000	13,000	
				교통비	61,600	61,600	0	
				숙박비	50,000	0	50,000	
2019.11.19.	**6급 R	2019.11.21. ~ 2019.11.22.	2019년 산림복지 분야 합동 워크숍 참석	일비	40,000	40,000	0	식비 및 숙박비 중복지급 (참가비 기재)
				식비	40,000	27,000	13,000	
				교통비	61,600	61,600	0	
				숙박비	50,000	0	50,000	
2019.12.10.	**7급 S	2019.11.27.	2019년 임산물수출 확대 워크숍 참석	일비	20,000	20,000	0	교통비 과다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8,300	5,800	2,500	
2019.12.10.	**6급 R	2019.12.05.	제26차 산림교육 심의위원회 참석 ※ 교육시간 14:00~16:00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6,000	6,660	9,340	
				교통비	5,800	5,800	0	
2019.12.30.	**9급 H	2019.12.30.	2019년 함께하는 충북 도민역량결집 원탁회의 참석 (13:00~17:30)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7,000	0	7,000	
				교통비	18,600	18,600	0	
2020.02.06.	**6급 R	2020.01.14.	영동곶감 특산물 홍보 및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업무추진	일비	20,000	10,000	10,000	일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0	0	0	
2020.03.02.	**6급 B	2020.01.14.	산불방지 대책 업무 협의 (13:00~17:30)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6,600	0	6,600	
				교통비	12,200	12,000	0	

【위법부당사항】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2²⁾에 따라 지급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기준에 따라 1일당 일비 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 1박당 4 ~ 7만원(정액지급 시 4 ~ 6만원, 실비정산 시 5 ~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6급 M 외 8인의 경우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세부사업 목적과 다르게 출장하거나 1일 여비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1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초과근무수당 등과 중복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며, [현황2]와 같이 **8급 K 외 5인의 경우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간담회 참석에 따른 참가비를 기 지급하였음에도 식비 및 숙박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였고, 9시 이후 출장을 시작하여 18시 이전에 출장을 완료하였음에도 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416,720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과오지급된 출장여비 416,72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 국내여비 운임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철도운임(실비-일반실), 선박운임(실비-2등급), 항공운임(실비), 자동차운임(실비), 일비(1일당 20,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식비(1일당 20,000원)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8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교육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기간제근로자 교육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2,189,600	2,009,600	180,000	
2020.06.19.	김□□	2020.06.22. ~ 2020.06.26.	2020년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술교육(2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19.	최□□	2020.06.22. ~ 2020.06.26.	2020년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술교육(2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25.	최□□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25.	황□□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25.	안□□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25.	장□□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2020.06.25.	박□□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25.	고□□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25.	박□□	2020.06.29. ~ 2020.07.03.	2020년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기술교육(3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08.	금□□	2020.07.06. ~ 2020.07.10.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기술교육 (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08.	윤□□	2020.07.06. ~ 2020.07.10.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기술교육 (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08.	장□□	2020.07.06. ~ 2020.07.10.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기술교육 (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08.	정□□	2020.07.06. ~ 2020.07.10.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기술교육 (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08.	정□□	2020.07.06. ~ 2020.07.10.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기술교육 (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14.	김□□	2020.07.13. ~ 2020.07.15.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 교육(2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14.	최□□	2020.07.13. ~ 2020.07.15.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 교육(2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17,200	17,2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27.	윤□□	2020.07.27. ~ 2020.07.31.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교육(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28,400	28,4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7.27.	정□□	2020.07.27. ~ 2020.07.31.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교육(4기)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과다 지급
				식비	13,200	13,200	0	
				교통비	28,400	28,4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위법부당사항】

-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고,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²³⁾에 따라 지급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기준에 따라 1일당 일비 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 1박당 4 ~ 7만원(정액지급 시 4 ~ 6만원, 실비정산 시 5 ~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교육여비 지급 시 “2020년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술교육(2기)” 외 4개 교육에 참여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하여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시군단위 정액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일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180,000원의 교육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과오지급된 기간제근로자 교육여비 180,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3) 국내여비 운임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철도운임(실비-일반실), 선박운임(실비-2등급), 항공운임(실비), 자동차운임(실비), 일비(1일당 20,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식비(1일당 20,000원)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1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기요금 납부 소홀

【현 황】

○ 전기요금 연체료 납부 내역

(단위:원)

연번	건명(고객번호)	지출일	납부금액	연체료	비 고
합계			2,747,000	5,166	
1	황간남성근린공원 (13 2565 8050)	20.01.28.	168,290	51	
2	황간남성근린공원 (13 2565 8032)	20.01.28.	258,630	94	
3	황간남성근린공원 (13 2583 9828)	20.01.28.	17,510	14	
4	금동첨터가로등 (13 2350 4863)	20.02.06.	119,860	355	
5	용두2공원가로등 (13 2389 6486)	20.02.06.	33,350	83	
6	조심동관수시설 (13 2037 0389)	20.02.06.	660,810	1,636	
7	회동노원화장실 (13 2342 5146)	20.02.06.	306,740	320	
8	회동노원가로등 (13 2494 4048)	20.02.06.	67,500	167	
9	읍사무소정각 (13 2161 3990)	20.03.02.	20,970	55	
10	공원	20.03.02.	320,680	829	
11	용두2공원화장실	20.03.02.	56,870	148	
12	읍사무소정각	20.03.02.	57,840	147	
13	3.1공원가로등	20.03.02.	125,570	298	
14	영동천변	20.03.02.	17,540	44	
15	이수공원	20.03.02.	10,740	27	
16	이수노원	20.03.02.	36,800	115	
17	금동첨터가로등 (13 2350 4863)	20.03.03.	120,540	54	
18	황간남성근린공원 (13 2565 8050)	20.04.16.	60,790	65	

연번	건명(고객번호)	지출일	납부금액	연체료	비 고
19	황간남성근린공원	20.04.16.	224,130	182	
20	황간남성근린공원	20.04.16.	17,510	14	
21	군유림 유실수단지 (13 2546 2859)	20.05.29.	12,250	146	
22	산불감시 CCTV (13 2258 4378)	20.05.29.	8,220	85	
23	양묘장 (13 2310 5474)	20.06.18.	11,580	143	
24	양묘장 (13 2617 4767)	20.06.25.	12,280	94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의 회계담당직원은 신규로 추가된 시설의 경우 개별고지납부를 지양하고 인터넷 빌링(Billing)을 신청하여 합산 청구토록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자동이체의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출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는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일까지 자동이체 공공요금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서 청구건에 대해서도 납기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산림과에서는 전기요금 납부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해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적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총24건의 고지 건에 대해서는 연체료 5,166원을 예산지출 처리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예산지출처리된 연체료 5,16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피복비 집행현황

지출일	예산과목	구입내역	구입처	지출금액 (원)	비고
2019.08.29.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근무복 3벌	-	300,000	청원산림보호직 근무복
2020.01.1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근무복 3벌	-	600,000	청원산림보호직 근무복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중 피복비 부분을 살펴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무복을 구입·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단위:원)

건 명	지출일	계약금액	계약자	비고
산불조심 홍보용 물품 구입	19.01.31.	4,300,000	-	총24,988,000원
산불조심 홍보용 물품 구입	19.02.12.	688,000	-	
산불예방 홍보물(산불조심 현수막,깃발)구입	19.01.31.	3,600,000	-	
산불예방 홍보물(산불조심 현수막,깃발)구입	19.01.31.	3,200,000	-	
산불예방 홍보물(산불조심 깃발)구입	19.01.31.	3,200,000	-	
산불예방 홍보물(산불조심 깃발)구입	19.01.31.	3,200,000	-	
산불예방 홍보물(산불조심 현수막,깃발)구입	19.01.31.	3,600,000	-	
2019 산불예방 홍보물(산불조심 깃발)구입	19.01.31.	3,200,000	-	
산불진화용 장갑 구입	19.01.25.	1,100,000	-	총16,570,000원
산불진화용 장갑 구입	19.01.31.	2,310,000	-	
산불진화복 구입	19.01.31.	3,500,000	-	
산불진화복 구입	19.03.05.	4,200,000	-	
산불진화용 안전화 구입	19.02.28.	4,340,000	-	
산불진화복 구입	19.04.15.	1,120,000	-	

건 명	지출일	계약금액	계약자	비고
산불조심 홍보용 물품 구입	20.01.28.	4,500,000	-	총30,727,500원
산불예방 홍보물(현수막,깃발) 구입	20.01.28.	3,500,000	-	
산불예방 홍보물(현수막,깃발) 구입	20.02.06.	2,000,000	-	
산불예방 홍보물(현수막,깃발) 구입	20.02.06.	2,000,000	-	
산불예방 홍보물(현수막,깃발) 구입	20.02.06.	2,000,000	-	
산불예방 홍보물(현수막,깃발) 구입	20.02.17.	2,000,000	-	
산불예방 홍보물(현수막,깃발) 구입	20.02.17.	2,000,000	-	
산불예방홍보 차량용 깃발 구입	20.02.06.	499,500	-	
산불예방 홍보물(깃발)구입	20.02.17.	2,000,000	-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	20.02.17.	1,460,000	-	
산불예방 홍보용품 구입	20.02.17.	288,000	-	
산불예방 홍보물(깃발)구입	20.04.23.	2,120,000	-	
산불예방 홍보물(깃발)구입	20.04.23.	2,120,000	-	
산불예방 홍보물(깃발)구입	20.04.23.	2,120,000	-	
산불예방 홍보물(깃발)구입	20.04.23.	2,120,000	-	
산불진화복 구입	20.02.17.	4,400,000	-	총11,245,000원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	20.02.17.	2,400,000	-	
산불진화복 구입비 지급	20.03.19.	3,360,000	-	
산불진화용 장비(랜턴)구입	20.03.27.	1,085,000	-	
산림보호 현수막 구입	20.05.29.	2,000,000	-	총11,000,000원
산림보호 현수막 구입	20.05.29.	2,000,000	-	
산림보호 현수막 구입	20.05.29.	3,000,000	-	
산림보호 현수막 구입	20.05.29.	2,000,000	-	
산림보호 현수막 구입	20.05.29.	2,000,000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함.(수의시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수의시담 생략 가능)
- 따라서,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에는 수의시담없이 계약가능하고,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시담(비교견적 등 시장조사 등을 통한 가격 조정)을 하여 계약하고, 2천만원 초과 물품 계약 시 일반입찰 또는 수의견적입찰을 통해 계약하여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럼에도, 산림과에서는 2019년, 2020년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전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이 각 24백만원, 30백만원으로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19년에는 8건, 20년에는 15건으로 분리발주하여 약식으로 계약하였고, 2019년, 2020년 산불진화장비 구입 전과 2020년 산림보호 현수막 구입 전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이 가 16백만원, 11백만원, 11백만원으로 통합 발주하여 최초 견적가격에 대한 수의시담을 통해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각 6건, 4건, 5건으로 분리 발주하여 견적금액 100%로 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부분적으로 누락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처리 건수	비고
지방재정	329	319	97.0%	311	94.5%	314	98.4%	10	

【위법부당사항】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2018년 6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에 대하여 기한이 지나 처리하거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현재 10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지 않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미처리 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 완료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91,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목적 외 사용항목	비고
4건				1,191,000		
2020년 명품테마 임도조성사업	소 계			482,000		회수
	20.07.17.~ 20.09.14.	-	1,272,686	372,686	진입금지 안내표지판2	
				99,314	제경비	
2019년 도로변 감나무 가로수 전정사업	소 계			31,000		회수
	19.11.28.~ 19.12.16.	-	523,576	23,576	공사중 안내표지판	
				7,424	제경비	
2019년 도마령광장 개선사업	소 계			104,000		회수
	19.06.19.~ 19.08.12.	-	861,200	78,100	슈퍼해비콘, 안전로프	
				25,900	제경비	
2019년 명품테마 임도조성사업	소 계			574,000		회수
	19.09.30.~ 19.11.28.	-	1,668,698	447,098	공사안내 입간판3, 안전현수막1	
				126,902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20년 명품테마 조성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상에 사용명목 중 ‘공사안내 입간판’, ‘슈퍼해비콘(라바콘)’, ‘공사안내 현수막’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 청구한 1,191,00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부당청구된 안전관리비 1,191,000원을 회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33,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착공내역 상 계약액	부당청구액	부당청구 등 미집행내역	비고
2건				233,000		
2019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소 계			193,000		회수
	19.12.16.~ 20.02.13.	-	144,443	144,4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감액 정산 누락	
				48,557	제경비	
2019년 감나무 가로수 하절기 전정사업	소 계			40,000		회수
	19.07.18.~ 19.08.16.	-	60,591	30,000	건기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 감액 오류	
				10,000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11조(공사 관련서류 검토·보고)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침 제24조(시공사 제출 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54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9년 민주시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외 1건의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각각 감액동의서 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감액분 누락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여 233,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233,000원을 회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준공검사 기한 내 미 실시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급자	착공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준공검사기한)	기한 초과일수	비고
2건							
임도구조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12,370	-	2020.03.12	2020.04.09	2020.05.28 (2020.04.23)	35일	
명품테마 임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6,110	-	2020.03.12	2020.04.14	2020.05.28 (2020.04.28)	30일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지방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산림과에서는 ‘임도구조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대하여 상기 현황과 같이 준공검사 기한을 30일 ~ 35일 초과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산림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